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7 선고 2019가단783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57352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7 선고 2019가단78385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학

변 론 종 결 2021. 3. 10.

판 결 선 고 2021. 4. 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18. 4.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C과 D 사이에 2019. 5.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D에게, 피고 B는 2018. 4. 25. 이 법원 접수 제173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C은 2019. 5. 16. 이 법원 접수 제196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D은 2017. 11. 1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3596호로 유익비 1억 4,448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5.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8나224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D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합10119호로 위 각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19. 6. 17. ‘D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199,834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들과 D의 근저당권설정계약

D은 2018. 4. 25.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D은 2019. 5. 16.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D의 딸),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D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본안사건의 1심 판결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8. 4. 25., 2019. 5. 16. 이전에 선고되어 소송비용상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판결 확정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2019. 6. 1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이 만족을 얻는 물적 기초가 되는 책임재산이 새롭게 감소하는 것으로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 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0617, 206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D이 피고들과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만큼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B는 2016. 3. 31.부터 2018. 6. 7.까지 D에게 합계 4,622만 원을 빌려준 후 그 원금과 이자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C은 2002. 6. 25. D에게 D의 딸 E의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서 E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E으로부터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고 남은 원금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E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② 사실상 피고들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들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므로, 피고들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 2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재현

부동산 목록

1. 순천시 F 대 504㎡
2. 순천시 F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93.45㎡. 끝.